

목포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347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2년 5월 17일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

1. 제안이유

- 목포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목포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을 조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제3조 제1항의 “별표”중
위원회명란중 “총무사회위원회”를 “기획총무위원회”로 “산업건설위원회”를
“경제건설위원회”로 하며
- 직위란중 “총무사회전문위원”을 “기획총무위원회전문위원”으로 “산업건설전문위원”을 “경제건설위원회전문위원”으로 개정.

3. 개정규칙안 : 별 첨

4. 신. 구조문 대비표 : 별 첨

5. 관련법령 : 해당 없음

6. 관련 부서의견 : 해당 없음

7. 예산상황 : 해당 없음

8. 입법예고 : 생략

9. 사전협의사항 : 해당없음

10. 기타참고사항 : 해당없음

목포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

목포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위원회명란중 “총무사회위원회”를 “기획총무위원회”로 “산업건설위원회”를 “경제건설위원회”로 하고, 직위란중 “총무사회전문위원”을 “기획총무위원회전문위원”으로 “산업건설전문위원”을 “경제건설위원회전문위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(별표)

전문위원별 직급(제3조관련)

현 행			개 정 안		
위 원 회 명	직 위	직 급	위원회명	직 위	직 급
<u>총무사회위원회</u>	<u>총무사회전문위원</u>	(생략)	<u>기획총무위원회</u>	<u>기획총무위원회전문위원</u>	(현행과 같음)
<u>산업건설위원회</u>	<u>산업건설전문위원</u>	(생략)	<u>경제건설위원회</u>	<u>경제건설위원회전문위원</u>	(현행과 같음)
(생략)	(생략)	(생략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
신·구조문 대비표

다른조례 목포시의회(공인조례)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종류)①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<u>목포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</u></p> <p>4. <u>목포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</u></p> <p>(별표)</p> <p>공인의 규격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<u>목포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</u></p> <p><u>직인 : 1.8cm</u></p> <p>5. <u>목포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</u></p> <p><u>장직인 : 1.8cm</u></p>	<p>제2조(종류)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목포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</u></p> <p>4. <u>목포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</u></p> <p>(별표)</p> <p>공인의 규격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목포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</u></p> <p><u>직인 : 1.8cm</u></p> <p>5. <u>목포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</u></p> <p><u>장직인 : 1.8cm</u></p>